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5 선고 2016가단5108376 판결 [보증금청구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14 선고 2016나68252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5 선고 2016가단5108376 판결

전문

원고 A

피고 1. B

2. C

변론 종결 2016. 9. 21.

판결 선고 2016. 10. 5.

주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갑 1, 2, 3,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2009. 9. 18. 주식회사 D로부터 피고들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E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의 기명식 보통주식 33,334주를 100,002,000원에 매수하고, 같은 날 국민은행계좌(F)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. 주장과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, 피고들의 권유로 1억 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한 것인데, 피고들이 원고가 투자한 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므로,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돈 1억 원에서 피고들이 반환한 2,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,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,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원고가 투자한 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피고들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한 1억 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는지, 즉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를 보건대, 갑 6호증의 1,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

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최성보